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민원인의 정보를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작성하는 구조금 신청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하도록 하며, 서식 상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항목을 현행화함.

2. 주요내용

가. 유족·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9호, 제11호)

- 1)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구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서류에 대해 신청인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함.
- 2)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안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신청서 내에 삽입함.

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 항목 현행화(안 별지 제1호)

현재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은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로 구분되나, 신청서의 경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한 항목으로 묶여 함께 표기되어 있어 위 각 임대유형을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대검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2. 3. 22. ~ 5. 2.)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번호		(※ 신청인이 적지 마시오)		
종류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 매입 임대주택 지원 추천 ☐ 전세 임대주택 지원 추천 (※ 해당 란에 √ 표시 하시오)			
범죄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동거가족	성인 () 명 , 미성년자 () 명 (※ 본인 제외)		
사건번호	검찰			
	법원			

피해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쓰시오)

주거지원을 받기 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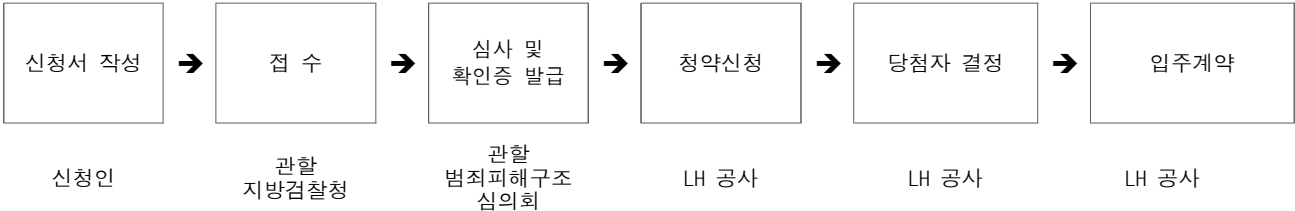
희망지역	1순위(), 2순위()
------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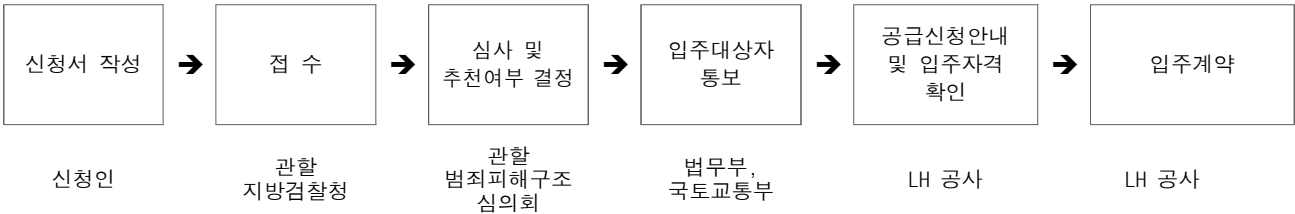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처리절차 및 첨부서류

○ 국민임대주택 처리절차



○ 매입·전세 임대주택 처리절차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신청인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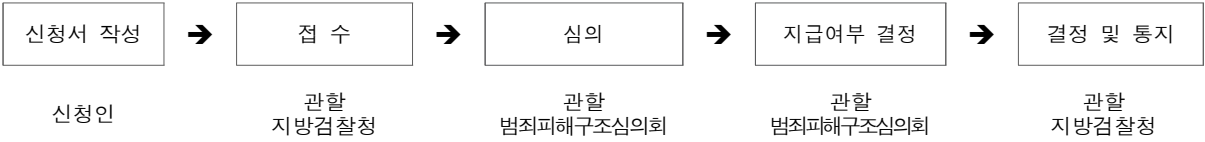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명칭과 등록번호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기재할 수 있음)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피해	발생일시							
	발생장소							
	피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및 소재지)						
		사망일	년 월 일					
	관할검찰청		00지방검찰청 (00지청)					
제1순위 유족	성명	피해자와의 관계	주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유 []무		※ ‘유’에 √ 하였을 시 기재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처 리 질 차



신청인 첨부서류	1.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청인은 위 제2호와 제5호의 서류로서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류”로 표시하는 서류의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인은 위 확인 사항에 대해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1. 주민등록표등·초본 [] 2. 소득금액증명 [] 3. (국세)납세증명서 []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5. 사업자등록증명 [] 6. 기본증명서(상세)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잘 읽고 기입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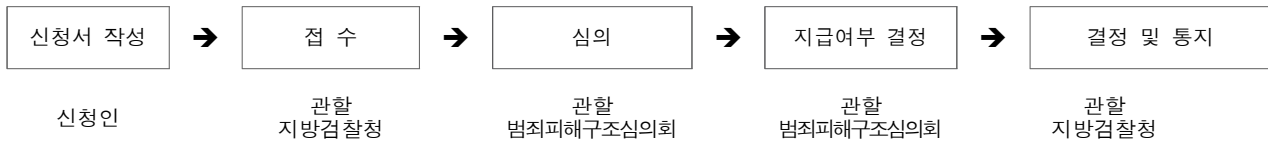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명칭과 등록번호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기재할 수 있음)			
	사업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범죄피해	발생일시			
	발생장소			
	피해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및 소재지)		
	①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			
관할검찰청	00지방검찰청 (00지청)			
② 기존 신체상의 장해 상태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유 []무	※ ‘유’에 √ 하였을 시 기재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처 리 절 차



신청인 첨부서류	1.주민등록표등·초본 2.신체상의 장애·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1부 4.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5.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단, 신청인은 위 제1호와 제5호의 서류로서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류”로 표시하는 서류의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1. 주민등록표등·초본 [] 2. 소득금액증명 [] 3. (국세)납세증명서 []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5. 사업자등록증명 [] 6. 기본증명서(상세)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귀하

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①의 란은 그 기입사항이 첨부하는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②의 란은 이미 신체상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범죄행위에 의하여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여 중장해로 된 경우에 기입하는 것으로 기입사항이 첨부되는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진단서와 같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